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9095 제출연월일 : 2025. 3. 19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하여 해당 시·도,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시·도에"를 "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"로 한다. 제22조제1항 중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"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부분 중 "환경부령으로"를 "해당 시·도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의 조례로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절차, 지원방법"을 "절차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아 혂 개 정 제18조(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제18조(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) ① 시·도지사는 환경부 조치) ① -----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 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 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 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 행할 수 있다. 다만, 환경부장관 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 ----- 특별시·광역시· 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 특별자치시・도 또는 특별자치 우에는 해당 시 · 도지사에게 비 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--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, 요청받은 시·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. 1. ~ 4. (생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22조(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제22조(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, 시장· 지정 등) ① ----- 시장・ 군수 · 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 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 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을 말한다. 이하 같다)----중 어린이 ·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(이하 "집중관리

구역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 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<u>환경</u> <u>부령으로</u>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- 1. ~ 6. (생략)
-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·해제 요건, 절차, 지원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다.

②
<u>해당</u>
시・도, 시・군・구(자치구를
말한다)의 조례로
1. ~ 6. (현행과 같음)
③
절차